



강사료 지급 지침

[시행 2020. 3. 1] [서울대학교학교지침 제-호, 2020. 2. 14, 일부개정]

서울대학교 교무처 학사과 02-880-5043

1. 목적

1. 목적

이 지침은「서울대학교 강사료 지급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강사료 지급 대상 및 범위

가. 강사: 주담당시간 범위 내에서 지급

나. 명예교수, 부설학교 교원: 주당 3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급

다. 전임교원: 연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초과한 경우. 다만, 대학원 논문연구는 포함하지 않음

라. 원격수업을 담당한 교원. 다만, 담당교원이 (가), (나), (다)에 해당할 경우에 한함

3. 강사료 지급 기준

가. 학기 중 강사료

1) 계산방법: 강사료 산정 주수(4주 또는 3주) × 주담당시간수 × 강사료 지급기준액

2) 강사료 산정주수

1학기

2학기

기간

강사료 산정주수

기간

강사료 산정주수

3월~5월

12주

9월~11월

12주

6월

3주

12월

3주

계

15주

계

15주

3) 주담당시간수

가) 주담당시간수는 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라 교과과정 학점구조에서 정한 강의의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미술대학, 음악대학 및 사범대학 체육교육과의 실기지도를 제외한 실습강의의 실험·실습·실기 시간은 2시간을 1시간으로 계산한다.

나) 공동강의의 경우 가)에 따라 산정된 주담당시간에서 강의 담당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4) 강사료 지급기준액

가) 기본지급단가

구 분

단가(원)

전임 초과 강사료

30,000

강사료

강사, 부설학교 교원

80,000

명예교수

90,000

나) 강좌별 수강인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기준액을 정할 수 있다.

- 수강인원이 81명 이상 150명 이하: 기본지급단가의 1.3배
- 수강인원이 151명 이상: 기본지급단가의 1.5배

다) 국내외 저명인사의 강사료는 기본지급단가의 4배 이내를 지급한다. 다만, 이 경우 소속기관장은 저명인사로 인정할 만한 관련 자료와 <별지 서식>에 의해 강사료 지급 배율(4배 이내) 등을 정하여 학기 개시 1개월 전까지 총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지급일: 학기 중 강사료는 강의를 진행한 월의 다음 월 5일에 지급하되, 해당 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한다. 다만, 전임교원의 초과강사료는 연간 수업 주수를 기준으로 초과한 경우 12월 강사료 지급 시 지급한다.

나. 방학 중 강사료

1) 지급기준

방학 중 강사료는 학기 전·후 각 1주씩 총 2주(연간 4주)를 방학기간 중 강의계획 수립, 성적처리 등을 위해 통상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기간으로 판단하여 강사에게 지급한다.

2) 계산방법 (원/월)

가) 강의 시: 해당 정규학기 지급 강사료 × 1/16

나) 폐강 시: 해당 정규학기 계약 강사료 × 1/32

다) 단, 강사의 귀책사유로 강의를 담당하지 아니한 경우 방학 중 강사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라) 해당 정규학기 강사료가 이 지침에 의해 지급되어야 할 총지급액보다 과소·과다 지급된 경우에는 이 지침에 의해 지급되어야 할 총지급액을 기준으로 방학 중 강사료를 산정한다.

3) 지급방법: 해당 정규학기에 대한 방학 중 강사료 총지급액을 방학 중 1회 지급한다.

4) 지급일: 1학기 방학 중 강사료는 8월 5일, 2학기 방학 중 강사료는 다음 연도 2월 5일에 지급하며, 해당 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한다.

다. 계절수업 강사료

계절수업을 담당할 경우 「서울대학교 계절수업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계절학기 운영 지침」에 따라 계절수업 강사료를 지급한다.

4. 기타사항

가. 시험시간은 규정 제2조의 보통강의와 동일하게 인정하여 강사료를 지급한다. 다만, 담당교수가 출석하여 감독하는 경우에만 한다.

나. 교내 행사(개교기념일 등) 또는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제3조의 대체공휴일)로 인하여 휴강한 경우 강사의 강사료는 담당 강의 시간수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 및 「서울대학교 학칙」 제74조에 따른 학점당 이수시간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 총장은 대학(원)별 특성을 고려하여 그 밖에 강사료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